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7 선고 2020가단5103002 판결 [구상금 및 사해행위 취소의 소]

전 문

원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하

피고1. A

2. B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단

담당변호사 유용일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창형, 정혜인

변론 종결2021. 8. 17.

판결 선고2021. 9. 7.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74,672,709원과 그중 91,090,518원에 대하여 2003. 4. 29.부터, 10,034,381원에 대하여는 2003. 6. 23.부터, 각 2005. 5. 31.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2020. 5. 25.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들 사이에 2020. 2. 1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B은 피고 A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20. 2. 10. 접수 제2238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1)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가 2001. 3. 2.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으로부터 42,500,000원을, 2002. 3. 15. 중소기업은행 성남공단지점으로부터 88,000,000원을 각각 대출받는데 대하여 신용보증약정을 하였다. 피고 A은 원고에게 위 신용보증약정으로 인하여 발생할 C의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 2) C가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2003. 4. 29. 중소기업은행에 91,090,518원, 2006. 3. 23. 주식회사 D에 43,472,341원 합계 134,562,85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피고 A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 433474호)를 제기하여 2007. 4. 10. '피고 A은 원고에게 134,510,014원과 그중 91,090,518원에 대하여는 2003. 4. 29.부터, 42,612,941원에 대하여는 2003. 6. 23.부터 각 2005. 5. 31.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2007. 3. 20.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7. 5. 26. 확정되었다.
- 3) 피고 A은 2012. 11. 29. 원고와 사이에 채무의 승인 및 분할상환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약정한 채무를 변제하여 왔는데, 2018. 4. 20. 이후 이를 변제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들

사이의 분할상환계약은 실효되었다.

원고는 대위변제일인 2003. 6. 23.부터 2017. 10. 30.까지 합계 33,437,960원을 회수하였고, 대위변제금 원금에 총당하여 대위변제금 원금 잔액은 101,124,899원(134,562,859원 - 33,437,960원)이며, 회수금에 대한 확정손해금 합계액은 72,176,690원이다. 원고는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에 대한 채권보전비용으로 1,010,910원을 지출하였고,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미수위약금으로 360,210원이 발생하였다.

4) 따라서 피고 A은 원고에게 174,672,709원[= 101,124,899원(잔존 대위변제금) + 72,176,690원(확정손해금) + 1,010,910원(채권보전비용) + 360,210원(미수위약금)]과 그중 91,090,518원에 대하여는 2003. 4. 29.부터, 10,034,381원에 대하여는 2003. 6. 23.부터 각 2005. 5. 31.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2007. 3. 20.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0. 5. 25.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C가 2001. 3. 2. 주식회사 D(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E)으로부터 42,500,000원을, 2002.

3. 15. 중소기업은행 성남공단지점으로부터 88,000,000원을 각각 대출받는데 대하여

신용보증약정을 하였다. 피고 A은 원고에게 위 신용보증약정으로 인하여 발생할 C의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C가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2003. 4. 29. 중소기업은행에 91,090,518원, 2006. 3. 23. 주식회사 D에 43,472,341원 합계 134,562,85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피고 A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 433474호)를 제기하여 2007. 4. 10. '피고 A은 원고에게 134,510,014원과 그중 91,090,518원에 대하여는 2003. 4. 29.부터, 42,612,941원에 대하여는 2003. 6. 23.부터 각 2005. 5. 31.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2007. 3. 20.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7. 5. 26. 확정되었다.

3) 피고 A은 2012. 11. 29. 원고와 사이에 채무의 승인 및 분할상환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약정한 채무를 변제하여 왔는데, 2018. 4. 20. 이후 이를 변제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20. 1. 17. 피고 A에게 기한의 이익상실을 통보하였다.

4) 피고 A은 2020. 2. 10. 딸인 피고 B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 앞으로 2020. 2. 10.자 증여를 원인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20. 2. 10. 접수 제22388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5)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피고 A의 적극재산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유일한 재산이었던 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약 5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F에 대한 신용정보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이 사건 구상금채권을 갖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2) 사해행위 성립 및 사해의사 피고 A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자신의 딸인 피고 B에게 증여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의 부족을 가져왔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피고 A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 B의 악의는 추정된다.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위 피고가 구입한 것으로서 이를 피고 A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이 사건 증여계약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되돌려 받기 위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을 제2, 3, 5, 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G, H의 각 증언만으로는 피고 B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제반 비용을 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 B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A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설령 위 피고의 주장과 같이 명의신탁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전 소유자(매도인) I가 이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명의신탁자(피고 B)와 명의수탁자(피고 A)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피고 A)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매도인 I)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명의수탁자(피고 A)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그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위와 같은 경우에 명의수탁자가 취득한 부동산은 채무자인 명의수탁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되고,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금전채권자 중 한 명에 지나지 않으므로, 명의수탁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74874 판결). 따라서 위와 같은 점에서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이 피고 B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위 피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 B은 원상회복으로 피고 A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는 매매가액에 상당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 B이 이를 변제하였으므로 가액반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인 2014. 3. 10. J조합 앞으로 채무자 B, 채권최고액 240,5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실제 대출금은

185,000,000원이었는데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인 2019. 9. 26. 160,000,000원이 변제된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상의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었다거나 위 등기가 말소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박진수

별지